

근현대 조경유산 보존을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개선 방안 연구

권예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석사 졸업

김민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박사 졸업

김충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kimch@nuch.ac.kr

국문초록

국제적으로 근현대 유산의 조경적 가치에도 주목하고 이를 전승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근현대 조경유산의 등록문화재 등록이 미미한 실정이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근현대 조경유산도 법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고 그 가치가 조명될 수 있도록 등록문화재 제도의 등록기준과 분류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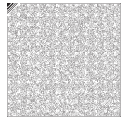
현재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유산의 유형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인 단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산의 조경적 가치가 검토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영국과 일본의 유사 제도를 참조하여 등록기준은 첫째, 조경문화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둘째 시대를 반영하거나 특징짓는 조경이 잘 남아있는 것, 마지막으로 주요 작가의 작품, 중요한 인물 또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분류체계는 기연구된 대분류-중분류-소분류의 건조물 문화재 분류체계와 정합성을 이루면서 근현대 조경유산의 세부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대분류는 건조물 분류체계를 따르되 중분류에 단일 조경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원 및 녹지, 광장, 정원이 추가되어야 한다. 건조물 유산과 결합된 정원 등의 조경유산은 건조물의 중분류를 토대로 하여 소분류에 세부 유형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향후 전수 조사되어야 할 등록 가능성이 있는 근현대 조경유산의 분류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근현대조경, 근대정원, 근대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문화유산

투고일자 2023. 2. 16. | **심사일자** 2023. 4. 25. | **게재확정일자** 2023. 5. 18.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제적으로 문화유산의 시간적 범위가 확장되면서 근대 시기의 유산뿐만 아니라 현대의 유산, 도시 또는 산업과 관련된 시설 등까지도 유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근현대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도 증가하고 있다(정상우 외 2018: 373). 또한 기념비적 건축물의 개별 개체에서 건축물의 군집, 정원 또는 공원, 마을, 도시 등 면단위의 유산까지 보호 대상의 공간적 범위도 확대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2001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였고, 근대 건축 문화재를 중심으로 근대 문화유산의 보호 정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등록에 이어 군산 내항, 익산 솜리, 서천 판교,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등록되는 등 점단위 보호방식에서 탈피하여 면단위로 보호하는 정책이 등록문화재 제도에도 반영되었다.

이에 비해 근대에 조성된 정원 또는 공원 등의 조경유산은 등록문화재 등록이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 중심의 보존으로 문화재 설명에 조경적 가치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일례로 서울 성북동 최순우 가옥을 들 수 있다. 문화재 명칭에서도 정원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조경유산으로 인식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조경유산 중 묘지공원인 부산 재한유엔기념공원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 근대 건축유산과 결합된 정원의 조경유산은 보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부대시설 또는 주변환경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고착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 근현대 조경유산 관련 제도적 연구가 미진했던 것도 조경적 가치가 주목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된다. 근현대 건축유산 연구는 신웅주·이상선(2014), 신안준(2015), 이정수·양승희(2015), 정상

우·임초롱(2018) 등이 제도 개선, 활용 방안 측면의 연구를 진행하였고, 문화재청에서도 목록화 조사, 관리 개선 방안, 방재 대책, 안전관리 체계 수립, 수리 기준과 체계 개선 방안 등의 연구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근현대 조경유산의 개념, 유형에 관한 연구나 목록화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근현대 조경유산 중 하나의 유형 또는 사례에 관한 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는데 강영조(2014), 김서린·김혜경·박미현(2014), 길지혜·박희성(2020)의 역사적 도시공원 및 근대 도시공원, 김진성(2009), 정성희(2016)의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정원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근현대 유산의 조경적 가치에 주목하였다는데 의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가치가 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근현대 조경유산도 법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고 그 가치가 조명될 수 있도록 등록문화재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현재 근현대 유산의 보호를 위한 중추적인 제도로 자리 잡은 등록문화재 제도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국내 등록문화재 제도의 현황을 등록기준과 분류체계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둘째, 문화재 유형에 조경유산의 유형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는 일본과 영국의 관련 제도를 고찰하였다. 셋째, 현재 조경유산이 우리나라 법제도상 규정된 용어는 아니므로 학문적 관점의 조경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법제도적 관점의 조경 대상을 파악한 후 종합해 근현대 조경유산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학문적 관점의 조경 대상은 관련 학회 또는 단체에서 발표한 내용과 주요 저서의 내용을 토대로 확인하였다. 법제도적 관점의 조경 대상은 주요 법령과 행정규칙, 행정제도를 토대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외 유사 제도를 참조하여 등록문화재 등록기준 개정안을 제시하고, 선행연구와 도출한 근현대 조경유산 범주를 토대로 분류체계안을 설정하였다.

II. 등록문화재 제도 고찰

1. 국내 등록기준과 분류체계

1) 규정 변천

2001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등록문화재가 신설되고 관련 규정이 포함되었다. 당시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을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인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였고, 근대의 유산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등록기준은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왔는데 2003년에는 ‘역사·문화·예술·산업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여 근대사라는 시대적 범위를 삭제하고 역사·문화·예술·산업 분야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2005년에는 ‘역사·문화·예술·사회·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뀌면서 범위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2020년에는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뀌면서 상징적 가치 외에 교육적 가치를 추가하였다.

이외 2001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은 등록기준으로는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등

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있다. 이 규정과 함께 등록기준에 ‘근대사’라는 용어가 제외되면서 등록문화재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산의 시기적 범위가 근대뿐만 아니라 현대까지 확장되었고 현대의 급격한 사회변화, 개발 등으로 인하여 멸실 위기에 처한 다양한 근현대의 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이 등록문화재 등록기준과 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지정문화재는 문화재 유형별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등록문화재는 포괄적으로 단일 등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등록대상 문화재 유형별 특성과 가치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조경적 가치를 지닌 유산의 등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¹

또한 등록대상 관련 규정의 변천을 살펴보면 조경유산은 등록되기 어렵게 규정되었음이 확인된다. 2001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등록대상이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로 한정하였다. 이후 2005년에는 모든 문화재로 명시하면서 동산문화재의 등록이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지정문화재의 유형과 동일하게 특정하였다. 그런데 이때 기념물 중 명승에 해당하는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등록문화재가 지정주체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도등록문화재로 대별된 2019년에도 여전히 명승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었고 이 규정은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즉, 조경유산의 대표적인 유형인 정원이 명승의 지정대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² 정원은 등록문화재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일례로 현재 사적분과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공능문화재분과위원회의 전문분야에 조경분야는 있지만, 등록문화재 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의 전문분야에 조경분야는 없다. 이는 조경적 가치가 명시되지 않은 포괄적인 단일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 명승 지정기준 중 유형별 분류기준의 역사문화명승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진 인문적 가치가 있는 인공물로 정원, 원림 등 인공경관을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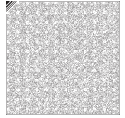


표 1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등록대상 관련 규정 변천

시행일자	내용
2001.7.1.	제42조(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물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2005.7.28.	제42조(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다.
2017.3.21.	제53조(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2019.12.25.	제53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2) 분류체계

문화재청은 근대 동산유물 목록화 5개년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동산문화재를 포함한 근대 문화유산 분류방안 연구를 2013년에 진행하였다. 지정문화재의 분류체계와 구별되는 근대 문화유산의 다양한 성격을 포괄한 분류체계안을 제안한 것이다(이하 ‘2013년 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체계를 구성하고 대분류는 동산과 건조물을 포괄하는 기준으로 설정하였는데 정치·외교, 산업·경제, 사회·생활, 문화·예술, 과학·기술, 군사·치안의 6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중·소분류는 동산 문화재와 건조물 문화재를 구분하였다. 동산문화재의 중분류는 행정, 정치 외교, 전통업(1차), 제조업(2차), 교통·통신(3차), 건설환경(3차), 상업·금융(3차), 정보서비스(4차) 등 48개 항목이다. 건조물 문화재의 중분류는 공공시설, 업무시설, 생산시설, 운수시설, 산업·발전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 기반시설, 주거시설 등 22개 항목이다.³ 이 22개 항목은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토대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동산과 건조물 문화재 분류 체계안 이외 경관부문 분류안도 별도로 제안하였는데 중분류와 소분류가 동일한 항목이 있는 등⁴ 소분류 항목이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도출된 한계가 있다.

2013년 분류체계는 현재 국가등록문화재 분류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국가등록문화재 총괄 현황표(2021.7.31.)를 보면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나뉘기는 하지만 대분류가 동산문화재와 건조물, 기타시설물, 시설물, 토목시설물 등의 건조물로 대별된다. 중분류는 공공시설, 교육시설 등 시설의 주요 기능에 따른 항목과 과학·기술, 군사·치안 등 세부 기능에 따른 항목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중분류의 문화집회시설이 소분류에서도 재등장하는 등 위계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분류를 동산문화재와 건조물 문화재로 구분한 2013년 분류체계로의 재정립과 근현대 조경유산의 분류체계 설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2. 국외 유사제도

1) 일본

우리나라의 문화재 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참고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재 분류와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도 문화재의 지정제도와 등록제도가 구분되어 있고 지정문화재 중 기념물 유형에 명승이 있다.⁵ 등록문화재는 현재 등록유형문화재, 등록기념물, 등록유형민속문화재로 유형을 구분하여 등록하고 있으며 유형별로 등록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근대 건축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문화재 유형은 등록유형문화재, 등록기념물(유적), 등록유형민속문화재이고, 근대 조경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문화재 유형은 등록기념물

3 문화재청, 2013, 『근대문화유산 분류방안 연구』, p.90.
〈표 6〉에서 굵은 파란색 글씨를 제외한 것이 건조물 문화재 분류체계에 해당한다.
4 중분류 항목으로 제시한 정치외교경관, 상업업무경관, 종교경관, 과학기술경관, 군사치안경관은 소분류 항목에도 해당한다(문화재청, 2013, 『근대문화유산 분류방안 연구』, pp.127~128).
5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한·중·일 명승 보존과 활용방안 논문집, pp.101~108

(유적), 등록기념물(명승지), 등록유형민속문화재이다. 등록기준에 건축과 조경의 대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시한 것은 등록유형문화재와 등록기념물(명승지)이다.

등록유형문화재와 등록기념물(명승지)의 공통적인 기준은 대상의 시기를 건축 또는 조성된 지 50년이 경과된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외 등록유형문화재의 등록기준은 건축물, 토목구조물, 기타 공작물 중 50년이 경과된 것으로 국토의 역사적 경관에 기여하는 것, 조형의 규범이 되는 것, 재현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등록기념물(명승지)의 등록기준은 공원, 정원, 기타 명승지 중에서 50년이 경과된 것으로 조원(조경)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 시대를 특징짓는 조형이 잘 남아 있는 것, 재현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등록기준은 등록문화재의 유형에 따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한 보호가 가능하며 ‘조경문화’가 명확히 등장하고 있다.

더불어 2012년 일본의 문화청 문화재부 기념물과는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건조물과 별도로 <근대의 정원·공원 등에 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등록기념물(명승지) 등록 후보 조사를 위해 유형을 메이 지 시대(1868~1912년) 이후 근대 시기의 정원, 공원, 식물원, 묘원, 가로수길, 시설(구)내의 원지, 기타의 7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이 중 시설(구)내의 원지 세부 유형은 대학 캠퍼스, 연구소, 학교, 사원, 회사 등이고 기타의 세부 유형은 인공림, 동물원 등으로 특정 설계 의도에 녹화, 조원이 이루어진 장소를 제시하였다.⁶

2) 영국

영국은 한국과 다른 문화재 분류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인데 문화재 유형을 크게 동산문화재인 문화유

표 2 일본 등록문화재 등록기준(문화재청, 2014, pp.75~76, 93)

구분	등록기준
등록 유형 문화재	건축물, 토목구조물 및 기타 공작물(중요문화재 및 「문화재보호법」 제19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을 지방공공단체가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함) 중 원칙적으로 건설 후 50년이 경과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국토의 역사적 경관에 기여하는 것 2. 조형의 규범이 되는 것 3. 재현하기 어려운 것
등록 기념물 (명승지)	공원, 정원 기타 명승지(명승 및 「문화재보호법」 제18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을 지방공공단체가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함) 원칙적으로 인문적인 것은 조성 후 50년을 경과된 것 또는 자연적인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조원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 2. 시대를 특징짓는 조형이 잘 남아있는 것 3. 재현하기 어려운 것

산(Cultural Property)과 부동산문화재인 역사적 환경(Historic Environment)으로 구분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적, 건축적,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물건(Cultural object and Treasure) 등이다. 역사적 환경은 선정기념물, 등재 건축물, 보존구역, 등록공원 및 정원, 등록 전쟁 유적지, 난파선 보호지역의 6가지로 분류한다.⁷

이 중 등재건축물(Listed Buildings)과 등록공원 및 정원(Register Parks and Gardens)은 대상의 시기를 완공 또는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된 것으로 규정하여 우리나라 등록문화재 대상의 시기적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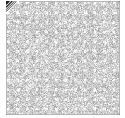
등재건축물의 등재기준은 법령에 의한 4가지 기준과 「Principles of Selection for Listing Buildings(2010)」에 의한 5가지 평가 기준 및 원칙이 있다. 법적 기준은 건축적 가치, 역사적 가치, 집단적 가치, 개별 요소의 가치이고 일반기준 및 원칙은 조성시기 및 희귀성, 미학적 가치, 선별성, 국가적 중요성, 보수상태이다.⁸

등록 공원 및 정원은 법적으로 등록은 하고 있지만 등재건축물과 달리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없다. 다만 잉글랜드 지역의 경우, 히스토리 잉글랜드(Historic England)가 등록 공원 및 정원으로 등록될 수 있는 장소

6 文化庁文化財部記念物課. 2012. 近代の庭園・公園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pp.17~23.

7 文化재청. 2014. 「선진국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 현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p.214.

8 文化재청. 2014. 앞의 보고서. p.262.



의 종류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 명성이나 문헌을 통해 보이는 취향의 발전에 영향을 준 장소, 초기 혹은 대표적 배치 방식이나 유형의 장소 또는 주요 디자이너의 작품, 중요한 인물 또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장소, 다른 유산들과 집단적 가치를 가지는 장소의 4가지이다.⁹ 더불어 등록 공원 및 정원의 선정을 위한 조성시기 및 희귀성의 기준을 등재건축물과는 별도로 제시하였다.¹⁰

히스토리 잉글랜드는 정원과 공원의 종류를 세분화한 등록지침서도 발행하였는데 도시조경, 전원조경, 기념조경, 기관조경의 총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도시조경은 광장, 공원, 정원, 산책로에 이르는 다양한 공간, 전원조경은 개인 주택 정원 등, 기념조경은 묘지와 매장지 등, 기관조경은 보건 및 복지시설, 교육시설, 공공시설, 산업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¹¹

이처럼 영국과 일본은 조경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준과 유형이 차별화되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현재 등록문화재 등록기준과 등록대상에 조경적 가치나 조경분야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다.

Ⅲ. 근현대 조경유산의 범주 도출

1. 학문적 관점

1899년 창립된 미국조경가협회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조경을 ‘자연 및 도시환경을 분석, 계획, 설계,

관리 그리고 스투어드십(stewardship)을 수행하는 분야’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유형을 주거공간, 공원과 휴양공간, 상징조형물공간, 가로경관 및 공공공간, 도로공간 및 가로시설, 정원 및 수목원 등으로 분류하였는데 공공공간을 조경의 대상으로 선언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 유사하게 국내에서도 임승빈과 주신하(2002)는 주거(정원, 공동주택), 공원(도시공원, 자연공원, 마을쉼터), 위락(관광지, 문화재), 시설(도로, 광장, 학교, 공장, 항만 등)로 분류하였다. 관광지, 문화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의 시설까지도 조경의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이명우 외 7인(2008)은 공원녹지, 주거단지, 레크리에이션, 관광, 비오톱 공간, 국토보전 및 생태복원 공간, 농촌공간으로 분류하였다. 이명우 외 15인(2011)은 정원, 단지, 도시공원, 자연공원, 가로조경, 관광, 전통조경, 생태, 농촌으로 대상을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조경학회는 2013년 「한국조경현장」을 제정하고 조경의 대상을 정원, 공원, 녹색기반시설, 교육공간, 주거단지, 건강과 공공복지공간, 여가관광공간, 역사·문화유산, 산업유산, 재생공간 등으로 분류하였는데 산업유산이나 재생공간을 명시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최근 2022년 12월에는 「한국조경현장」을 10년 만에 개정하면서 조경의 대상을 정원, 공원과 녹지, 광장과 가로, 건축 외부 공간, 체육 공간, 관

9 공원&정원. <http://www.parksandgardens.org>.

10 등록공원 및 정원 선정을 위한 ‘조성시기 및 희귀성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750년대 이전의 사이트로 원형의 주요 부분이 상당량 분명하게 남아있는 것
2. 1750~1840년에 조성된 것으로 원래 디자인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
3. 1840년 이후 주요 개발 단계를 거친 특별한 가치를 지님. 비교적 온전한 사이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특별한 가치의 정도가 상승함
4. 1945년 이후의 사이트는 각별히 신중한 선택이 요구됨
5. 30년 미만의 사이트는 탁월한 우수성과 위협을 받고 있을 때만 등록 공원 및 정원에 포함(문화재청, 2021,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p.79)

11 1. 도시조경: 도시 및 교외 정원, 도시단독주택정원, 텃밭, 육묘장, 도시광장, 공공산책로, 유원지, 공공공원 및 시립정원, 해변정원, 식물원, 20세기 공공공간 조경
 2. 전원조경: 로마제국 시대 이전(로마 정원), 로마제국 이후(중세, 1550~1660C 저택 정원, 1550~1660, 사슴 사냥터, 1660~18C 중반 저택정원), 윌리엄 켄트와 18C 초 조경, 18C 중반~19C 초 공원(빅토리아 정형식 정원, 20세기와 부흥운동, 미술과 공예 정원, 식물 중심 정원), 모더니즘과 그 이후
 3. 기념조경: 교회 묘지, 비성공회교도 묘지, 공동묘지, 화장터, 군사 묘지, 긴급 집단 매장지, 공공기관 매장지, 가족묘
 4. 기관조경: 보건 및 복지 조경, 대학 및 전문대학, 학교, 정부 및 공공건물 시설 및 공공 인프라, 군 기지, 산업 및 상업 건물 조경 (문화재청, 2021, 앞의 보고서, pp.79~83.)

광과 여가 공간, 역사공간과 문화재, 해안·하천·수공간, 생태환경, 경관으로 명시하였다. 이전 현장에서 건축물의 기능에 따라 구분한 대상들을 건축 외부 공간이라는 용어로 통합하였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종합하면 공원, 정원, 관광·체육·역사공간, 광장, 가로, 건축 외부 공간 등이 조경 행위가 이루어지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2. 법제도적 관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반시설 중에서 공간시설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간이 조경의 대상에 해당하며, 이 대상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광장의 세부 유형이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은 도시공원과 녹지로 대별되는데 조경의 대상에 해당한다. 도시공원은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구분된다. 생활권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 등으로 세분된다. 녹지에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가 있다.

「건축법」에 규정된 ‘대지의 조경’ 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 용도에 따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휴게시설 등 27가지로 세분되는데¹²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한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인 관광지와 관광단지도 조경의 대상에 속하며, 「농어촌정비법」에서도 유사한 대상을 다루고 있다. 「경관법」에 의거한 가로환경, 경관, 「자연공원법」에 의거한 국립·도립·군립공원과 지질공원, 이 공원 내에 도입되는 안전시설과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¹³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국립·공립·사립·학교 수목원, 국가·지방·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교육정원, 치유정원, 실습정원, 모델정원도 조경의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행정제도 상의 조경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경설계표준품셈(2021)>, 국토교통부의 <조경설계기준(2019)> 등에 명시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조경설계표준품셈(2021)>에는 위의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상과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야영장, 둘레길, 하천, 동물원, 골프장, 스키장, 보행자전용도로 등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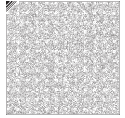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의 <조경설계기준(2019)>에 조경의 대상이 가장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도시 및 단지조경, 도시공원 및 광장, 주제공원, 자연공원, 생태공원, 녹지, 소생물권, 관광지/휴양지, 체육·위락시설, 문화재 및 사적지, 정원조경, 학교조경, 운수시설정원

표 3 <조경설계기준(2019)>의 대상

구분	세부 유형
도시 및 단지조경	주거단지, 산업단지, 교육연구단지, 생태도시 및 생태마을
도시공원 및 광장	놀이터,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묘지공원, 체육공원, 광장
주제공원	조각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하천공원)
자연공원	-
생태공원	-
녹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보행자 공간, 녹도
소생물권	-
관광지 / 휴양지	유원지, 온천관광휴양지, 수변해양관광휴양지, 육상산악관광휴양지, 농어촌휴양지, 자연휴양림, 수렵장
체육·위락시설	종합운동장, 골프장, 스키장, 경마승마장, 요트장, 야외 수영장, 빙상장, 눈썰매장, 국궁장,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재 및 사적지	사적지, 전적지, 민속촌
정원조경	주택정원, 공장정원, 학교원, 가로정원
학교조경	-
운수시설정원 (공항/항만)	-
가로조경 (공공디자인)	-
농어촌조경 및 도시농업	-
전통공간조경	-
기타조경시설	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 동식물원 / 수족관, 수목원 / 자연학습장, 전시시설(박물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지속가능한 녹색 캠퍼스, 어린이활동공간, 어항 관광시설, 하수처리장, 다기능 어항시설

12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3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공원시설).



(운항/항만), 가로조경(공공디자인), 농어촌 조경 및 도시농업, 전통공간 조경, 기타조경시설의 총 17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3. 근현대 조경유산의 범주

조경의 대상 중 기능 및 용도를 중심으로 위계를 고려하여 통합 가능한 유형과 제외할 필요가 있는 유형을 분석하였다. 온천관광휴양지 등은 휴양지로 통합하였고, 교육연구단지, 공장정원, 산업단지 등은 기타 건축물 조경으로 통합하였다.

어항 관광시설은 관광지, 어린이활동공간과 놀이터는 어린이공원, 휴양지 등에 도입될 수 있는 시설임에 따라 제외하였다. 구체적인 공간 또는 영역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조경 기술·공법의 적용에 관한 소생물권, 도시농업, 농어촌 조경, 생태도시 및 생태마을, 지속가능한 녹색 캠퍼스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자연공원법」에 의거한 공원은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에 지정되는데, 명승의 유형 중 자연명승으로 중복·지정하여 보호되기도 하며 이러한 자연물이 중심인 유형은 근현대의 시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하였다. 「국토계획법」에 의거한 용도구역 중 하나인 도시자연공원구역 역시 근현대의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자연물이 중심인 구역이며 도시공원의 한 가지 유형으로 조성·활용되기도 하므로 제외하였다. 이외 문화재 및 사적지, 전통공간 조경은 근현대 조경유산의 범주를 포괄하는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종합하면 근현대 조경유산의 범주는 유사한 기능 및 용도를 기준으로 크게 도시공원, 광장, 녹지, 정원, 관광지·휴양지, 문화시설, 체육 체육·위락시설, 기타 건축물 조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범주의 세부 유형은 <표 4>와 같이 도출하였다.

이 범주는 일본의 등록기념물(명승지) 유형, 영국의 히스토리컬 잉글랜드에서 규정한 도시·기관·기념 조경의 유형과도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근현대 조경유산의 범주

구분	세부 유형	관련 법령 및 제도
도시공원	국가도시공원	공원녹지법
도시공원 (생활권 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공원녹지법 조경설계기준
도시공원 (주제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 조각공원, 생태공원	공원녹지법 조경설계기준
광장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조경설계기준
녹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보행자 공간, 녹도	공원녹지법 조경설계기준
정원	국가·지방·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교육정원, 치유정원, 실습정원, 모델정원	수목원정원법
관광지·휴양지	유원지, 휴양지, 자연휴양림, 수렵장	관광진흥법 조경설계기준
문화시설	수목원,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공연장, 박람회장, 자연학습장	자연공원법 수목원정원법 조경설계기준
체육·위락시설	종합운동장, 골프장, 스키장, 경마승마장, 요트장, 야외 수영장, 빙상장, 눈썰매장, 국궁장, 수련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조경설계기준
기타 건축물 조경	주거단지, 근린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숙박시설, 공장,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등	건축법 조경설계기준

IV. 등록문화재 제도개선 방안

1. 등록기준 개정안

국가지정문화재와는 다르게 등록문화재는 유형 구분 없이 단일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경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등록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은 한국과 같은 개념의 등록문화재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근현대 조경유산의 등록기준을 등록기념물(명승지)에서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지정문화재 제도 내의 기념물(명승)과 등록문화재제도 내의 등록기념물(명승지)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며 우리나라도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영국의 등재건축물과 등록 공원 및 정원은 그 대상의 시기를 완공 또는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된 것으

로 규정하여 한국의 근대 건축유산과 조경유산의 시기적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 관련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일본의 조경유산 등록기준에서는 조원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 시대를 특징짓는 조형이 잘 남아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영국의 조경유산 등록기준에서는 대표적인 배치방식이나 유형의 장소, 주요 디자이너의 작품, 중요한 인물 또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장소, 다른 유산들과 집단적 가치를 가지는 장소를 참고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근현대 조경유산의 등록기준은 첫째, 조경문화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등록기준으로 정의해야 한다. 현재는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로 정의되어 있으나 조경문화는 기술발전이나 예술적 사조 이외에 기후, 환경, 재료 등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고 주거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조경문화의 발전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시대를 반영하거나 특징짓는 조경이 잘 남아 있는 것을 등록기준으로 정의해야 한다. 현재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것,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조경이라는 구체적인 분야가 등록기준에 언급되어야 조경유산을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표 5 등록문화재 등록기준 개정안

구분	내용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산 및 건축유산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 조경유산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경문화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2. 시대를 반영하거나 특징짓는 조경이 잘 남아있는 것 3. 주요 작가의 작품, 중요한 인물 또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것

셋째, 주요 작가의 작품, 중요한 인물 또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것을 등록기준으로 정의해야 한다. 근현대의 조경유산은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례가 많고, 그것에 대한 도면 등의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와 같은 별도의 등록 기준 마련과 더불어 「문화재보호법」 제53조 1항 명승 제외 규정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분류체계 재설정

2013년 분류체계의 대분류와 같이 동산, 건조물, 조경유산을 모두 포괄하여 분류할 수 있는 정치·외교, 산업·경제, 사회·생활, 문화·예술, 과학·기술, 군사·치안의 6개 항목 체계를 따르는 것은 등록문화재 전반의 등록 및 관리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건축법」에서도 건축물 조경이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과 결합되어 조성되는 조경을 명시하고 있고 최근 「한국조경현장」에도 ‘건축 외부 공간’이 조경 대상 중 하나로 선언되고 있는 바, 건축물 용도 중심으로 분류된 2013년 분류체계(건조물) 기준으로 조경유산 분류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근현대 조경유산의 각 유형을 2013년 분류체계와 정합하도록 중분류와 소분류의 항목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도시공원, 녹지, 광장, 정원은 다양한 세부유형이 있고 사회·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형임에 따라 대분류-사회·생활의 하위 중분류의 항목으로 추가가 가능하다.

이중 도시공원(생활권공원, 주제공원)과 녹지는 현재 「공원녹지법」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공원녹지’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중분류 항목 중 하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도시공원(주제형 공원) 중 모지공원은 모지가 「장사 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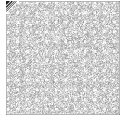


표 6 근현대 조경유산 분류체계안

대분류		중·소분류							
01. 정치·외교	01.-1 공공시설								
	-청사 -법원 -소방서 -우체국 -관사/사택/ 주택								
02. 산업·경제	02.-1 업무시설	02.-2 생산시설	02.-3 운수시설	02.-4 산업·발전 시설	02.-5 상업시설	02.-6 숙박시설	02.-7 기반시설		
	-사무소 -은행 -방송국 -사택 -창고	-농어업관련 시설(축사) -공장 -양조장 -창고 -선탄시설 -집배송시설 -염전	-공항시설 -항만시설 -철도시설 -육상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	-산업단지 -발전소 -분노 및 쓰레기시설 -창고	-도매 및 소매시장 -소매점	-여관 -여인숙 -호텔	-도로 -철도 -댐 -교량 -터널 -상수시설 -정수시설 -배수시설		
03. 사회·생활	03.-1 주거시설	03.-2 종교시설	03.-3 교육시설	03.-4 근린생활 시설	03.-5 장례및 묘지시설	03.-6 공원 및 녹지		03.-7 광장	03.-8 정원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사찰 -성당 -교회 -봉안당	-학교 -강당 -교육회관 -도서관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마을회관	-묘지공원 -화장시설 -장례식장 -봉안당	-국가도시 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 공원 -방재공원 -조각공원 -생태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보행자 공간 -녹도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04. 문화·예술	04.-1 문화집회 시설	04.-2 관광휴게 시설	04.-3 체육·위락 시설						
	-수목원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유원지 -휴양지 -자연휴양림 -수렵장 -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 -관망탑 -휴게소	-골프장 -스키장 -경마승마장 -요트장 -야외수영장 -빙상장 -눈썰매장 -국궁장 -체육관 -종합운동장						
05. 과학·기술	05.-1 의료시설	05.-2 연구시설	05.-3 과학기술 시설						
	-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원 -보건소	-연구소 -관측소	-과학관 -천문대 -항공우주센터						
06. 군사·치안	06.-1 군사시설	06.-2 치안시설	06.-3 교정시설						
	-군시설 -격납고 -관사	-경찰서 -파출소 -망루	-구치소 -교도소 -소년원						

※ 2013년 분류체계(건조물)에서 추가한 유형을 굵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관한 법률도 적용받는 장사시설(葬事施設) 중 하나임에 따라 대분류-사회·생활, 중분류-장례 및 묘지시설의 하위 소분류에 추가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관광지·휴양지, 문화시설, 체육·위락시설의 유형은 모두 대분류-문화·예술의 중분류에 해당하므로 소분류의 항목으로 추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건축물 조경은 2013년 분류체계 중·소분류의 각 건조물에 부속된 정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종합하였을 때 중분류 항목으로 추가한 공원 및 녹지, 광장, 정원은 건축유산과 별도로 독립된 단일 조경유산이라 할 수 있다. 이외는 건축물 또는 건조물 유산과 결합된 조경유산에 해당한다. 단일 조경유산 뿐만 아니라 일본의 시설(구) 내의 원지나 영국의 기관 조경과 같이 건축물과 결합된 조경유산의 유형도 분류 체계에 구체적으로 구분·명시되어야 향후 등록 가능성이 있는 조경유산에 대한 자원조사와 유산의 조경적 가치 판단을 위한 대상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V. 결론

국제적으로 유산의 조경적 가치를 주목하고 이를 전승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등록문화재 제도는 동산문화재와 건축물 등의 건조물 문화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근현대 조경유산은 원형을 유지하는 보존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하여 개발 등으로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동산이나 건조물 문화재에 비해 더욱 멸실과 훼손의 위협에 방치되어 있다. 따라서 보존을 위한 선제적인 제도 마련이 긴급한 대상이며 우리나라도 영국, 일본과 같이 조경유산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등록문화재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조경적 가치 발굴이 필요한

근현대 유산의 범주를 총체적으로 도출하고, 이 유산의 보존을 위해 국외 사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의 개정안과 분류체계안을 제시하였다. 등록기준은 유산의 조경적 가치가 검토될 수 있도록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분류체계는 건조물 문화재의 분류체계와 정합성을 이루면서 조경유산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등록 가능성이 있는 근현대 조경유산의 분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분류체계는 근현대 조경유산의 목록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제시한 것임에 따라 실질적인 제도 운영 시 적용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향후 근현대 조경유산의 전수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분류체계가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근현대 조경유산은 등록문화재 제도 내에서만 보존해서는 안되고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도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보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 이 논문은 주저자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사 학위논문(제목: 조경유산의 등록문화재 확대방안 연구)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조, 2014, 「근대 부산 대정공원에서 개최된 국낙원(菊樂園)의 구성과 홍보 전략」,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3), 한국전통조경학회.
- 길지혜 · 박희성, 2020, 「영국, 미국, 일본의 '역사적 도시공원' 보존 전략 사례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8(2), 한국조경학회.
- 김서린 · 김혜경 · 박미현, 2014, 「근대 사직공원의 형성과 변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4), 한국전통조경학회.
- 김진성, 2009, 「목포 “이훈동 정원”의 일본식 정원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3), 한국전통조경학회.
- 신한준, 2015, 「등록문화재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건축 59(4), 대한건축학회.
- 신웅주 · 이상선, 2014, 「근대 건축 등록문화재의 보존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6(1), 한국농촌건축학회.
- 이명우 외 7인, 2008,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조경학의 이해』, 기문당.
- 이명우 외 15인, 2011, 『조경계획』, 기문당.
- 이정수 · 양승희, 2015, 「근대 건축 및 시설물 문화유산 분류방안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9), 한국산학기술학회.
- 임승빈 · 주신하, 2002, 『조경계획 · 설계』, 보문당, p.6.
- 정상우 · 임초롱, 2018, 「근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정책학적 연구」, 법학연구 21(1),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p.373.
- 정성희, 2016, 「1930년대 한국 주택 정원의 변화 양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한 · 중 · 일 명승 보존과 활용방안 논문집, pp.101~108.
- 국토교통부, 2019, 『조경설계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2021, 『조경설계표준품셈』.
- 문화재청, 2013, 『근대문화유산 분류방안 연구』, pp.90, 127~128.
- 문화재청, 2014, 『선진국 문화재 보존 · 관리 규범 현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pp.75~93, 214, 262.
- 문화재청, 2021,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pp.79~83.

- 文化庁文化財部記念物課, 2012, 近代の庭園・公園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pp.17~23.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접속일: 2023. 1. 20.).
- 공원&정원, <https://www.parksandgardens.org>(접속일: 2021. 12. 20.).
- 문화재청, <https://www.cha.go.kr>(접속일: 2023. 1. 20.).
- 히스토리 잉글랜드, <https://historicengland.org.uk>(접속일: 2021. 12. 20.).

A Study on the System Improvement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for the Preserva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Landscape Heritage

KWON Yeji Master's degree, Dept. of Heritag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Graduate School of Cultural Heritag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KIM Minseon Ph.D., Dept. of Heritag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Graduate School of Cultural Heritag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KIM Choongsik* Professor, Dept. of Heritag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Graduate School of Cultural Heritag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Corresponding Author: kimch@nuch.ac.kr

Abstract

Efforts are being made internationally to pay attention to the landscape value of modern and contemporary heritage and to pass it on. However, in Korea, the registra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landscape heritage as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is insignificant. There has also been little discussion on ways to improve the system in this regard. This study sought ways to improve the registration criteria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system so that modern and contemporary landscaping heritage could be protected.

Currently, the registration criteria for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are not stipulated for each type of heritage, but are stipulated as a single comprehensive standard. Registration criteria should be separately prepared so that the landscape value of the heritage can be reviewed. First, the registration criteria have an important value in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landscape culture. Second, well-preserved landscaping reflects or characterizes the times. Lastly, it should be defined as related to the works of major artists or important figures or historical events.

The classification system must match the studied building cultural property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detailed types of modern and contemporary landscape heritage should be specified. The major classification follows the building cultural property classification system, but parks and green spaces, squares, and gardens, which can be called a single landscape heritage, should be added to the middle classification. Landscaping heritage, such as gardens combined with building heritage, shall be specified in the subcategory based on building use.

Keywords modern landscape, modern gardens, a modern cultural property,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Law, cultural heritage

Received 2023. 2. 16. | Revised 2023. 4. 25. | Accepted 2023. 5. 18.

